

사업주 보관용 보존기한 5년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30년 보관

사업장명

아이언에이지(주)

검진기간 2023년 2월27일 ~ 2023년 2월27일

2023년

배치전건강진단 결과표

> 일반검진

> 특수검진

> 10인미만 소규모 국고검진

> 학생검진

> 종합건강진단

> 암검진

건강검진
Medical Examinations

> 기타 검진

- 중국비자 신체검사
- 위생분야 종사자검사
- 자동차작성검사
-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 예방접종

- 독감, 자궁경부암, 간염(A, B)
- 피싱풀, 풍진, 폐렴구균 외



[38458]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28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건강진단팀
053-856-1211]

모바일 앱 Health Keeper



안드로이드 iOS

1. 건강관리구분 ·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적합성 평가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적합여부(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2 보호구착용 3 추적검사 4 근무중치료 5 근로시간 단축 6 작업전환 7 근로금지 및 제한 8 직업병확인의뢰안내 (건강진단기관이 안내) 9 기타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C _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 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다 건강장애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D ₂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_N	질병의 소견이 있어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결과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의 침습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라 건강장애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2.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표

종교로 자수	계	0
	남	0
	여	0

실시 기간	2023-02-27	~	2023-02-27
	2023-02-27		2023-02-27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등록번호	302-81-14525
업종코드번호	42131

사업장명	아이언에이지(주)	사업자등록번호	302-81-14525	주요 생산품
소재지	(290-23)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옥천동이로 684	전화	0437338091	

1. 건강관리구분 ·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적합성 평가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적합여부(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2 보호구착용 3 추적검사 4 근무중치료 5 근로시간 단축 6 작업전환 7 근로금지 및 제한 8 직업병확진의뢰안내 (건강진단기관이 안내) 9 기타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다 건강장애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C _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라 건강장애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D 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₂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_N	질병의 소견이 있어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2.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질 병 유 소 견 자 현 황

구 분	질 병 코드	질병유소견자	계			직 빠 별								연 빠 별							
						1년 미만		1~4년		5~9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30~39		40~49		50세 이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일반 질병유 소견자	A	특정감염성 질환	-	-	-	-	-	-	-	-	-	-	-	-	-	-	-	-	-	-	-
	B	바이러스 및 기생충성 질환	-	-	-	-	-	-	-	-	-	-	-	-	-	-	-	-	-	-	-
	C	각성상 생물	-	-	-	-	-	-	-	-	-	-	-	-	-	-	-	-	-	-	-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애	-	-	-	-	-	-	-	-	-	-	-	-	-	-	-	-	-	-	-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	-	-	-	-	-	-	-	-	-	-	-	-	-	-	-	-	-
	F	정신 및 행동장애	-	-	-	-	-	-	-	-	-	-	-	-	-	-	-	-	-	-	-
	G	신경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H	눈, 귀, 코 및 입부 기기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I	순환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J	호흡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K	소화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N	비뇨생식계의 질환	-	-	-	-	-	-	-	-	-	-	-	-	-	-	-	-	-	-	-
	O	임신, 출산 및 산후	-	-	-	-	-	-	-	-	-	-	-	-	-	-	-	-	-	-	-
	P	주신기예기원한 특정병태	-	-	-	-	-	-	-	-	-	-	-	-	-	-	-	-	-	-	-
	Q	선헌성기형, 변형 및 혼색체 이상	-	-	-	-	-	-	-	-	-	-	-	-	-	-	-	-	-	-	-
	R	기타증상 정후와 일상질환사인 이상소견	-	-	-	-	-	-	-	-	-	-	-	-	-	-	-	-	-	-	-
	S	손상	-	-	-	-	-	-	-	-	-	-	-	-	-	-	-	-	-	-	-
	T	다발성 및 기타 손상, 증득 및 그결과	-	-	-	-	-	-	-	-	-	-	-	-	-	-	-	-	-	-	-
	V	온수사고	-	-	-	-	-	-	-	-	-	-	-	-	-	-	-	-	-	-	-
	W	불의의 손상의 기타 의인	-	-	-	-	-	-	-	-	-	-	-	-	-	-	-	-	-	-	-
	X	고문장해 및 자해	-	-	-	-	-	-	-	-	-	-	-	-	-	-	-	-	-	-	-
	Y	기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	-	-	-	-	-	-	-	-	-	-	-	-	-	-	-	-	-	-
	Z	감염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	-	-	-	-	-	-	-	-	-	-	-	-	-	-	-	-	-	-
	110	소음성 니泞	-	-	-	-	-	-	-	-	-	-	-	-	-	-	-	-	-	-	-
	121	광물성 분진	-	-	-	-	-	-	-	-	-	-	-	-	-	-	-	-	-	-	-
	122	연분진	-	-	-	-	-	-	-	-	-	-	-	-	-	-	-	-	-	-	-
	123	석면분진	-	-	-	-	-	-	-	-	-	-	-	-	-	-	-	-	-	-	-
	124	용접분진	-	-	-	-	-	-	-	-	-	-	-	-	-	-	-	-	-	-	-
	129	기타분진	-	-	-	-	-	-	-	-	-	-	-	-	-	-	-	-	-	-	-
	130	진동장해	-	-	-	-	-	-	-	-	-	-	-	-	-	-	-	-	-	-	-
	141	고기압	-	-	-	-	-	-	-	-	-	-	-	-	-	-	-	-	-	-	-
	142	저기압	-	-	-	-	-	-	-	-	-	-	-	-	-	-	-	-	-	-	-
	151	전기압박사선	-	-	-	-	-	-	-	-	-	-	-	-	-	-	-	-	-	-	-
	152	자외선	-	-	-	-	-	-	-	-	-	-	-	-	-	-	-	-	-	-	-
	153	적외선	-	-	-	-	-	-	-	-	-	-	-	-	-	-	-	-	-	-	-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	-	-	-	-	-	-	-	-	-	-	-	-	-	-	-	-	-	-
	190	기타 물리적인자와 의한 장해	-	-	-	-	-	-	-	-	-	-	-	-	-	-	-	-	-	-	-
	201	노이즈 혼란	-	-	-	-	-	-	-	-	-	-	-	-	-	-	-	-	-	-	-
	202	N,N-디에틸포름아이드	-	-	-	-	-	-	-	-	-	-	-	-	-	-	-	-	-	-	-
	203	미틸부틸케톤	-	-	-	-	-	-	-	-	-	-	-	-	-	-	-	-	-	-	-
	204	미틸에틸케톤	-	-	-	-	-	-	-	-	-	-	-	-	-	-	-	-	-	-	-
	205	미세이소부틸케톤	-	-	-	-	-	-	-	-	-	-	-	-	-	-	-	-	-	-	-
	206	벤젠	-	-	-	-	-	-	-	-	-	-	-	-	-	-	-	-	-	-	-
	207	사포화탄소	-	-	-	-	-	-	-	-	-	-	-	-	-	-	-	-	-	-	-
	208	아세트	-	-	-	-	-	-	-	-	-	-	-	-	-	-	-	-	-	-	-
	209	오르토-클로로로벤젠	-	-	-	-	-	-	-	-	-	-	-	-	-	-	-	-	-	-	-
	210	이소부틸알콜	-	-	-	-	-	-	-	-	-	-	-	-	-	-	-	-	-	-	-
	211	이소프로필알콜	-	-	-	-	-	-	-	-	-	-	-	-	-	-	-	-	-	-	-
	212	이산화탄소	-	-	-	-	-	-	-	-	-	-	-	-	-	-	-	-	-	-	-
	213	크실린	-	-	-	-	-	-	-	-	-	-	-	-	-	-	-	-	-	-	-
	214	클로로포름	-	-	-	-	-	-	-	-	-	-	-	-	-	-	-	-	-	-	-
	215	클루엔	-	-	-	-	-	-	-	-	-	-	-	-	-	-	-	-	-	-	-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	-	-	-	-	-	-	-	-	-	-	-	-	-	-	-	-	-	-
	217	1,1,2,2-네트리클로로에탄	-	-	-	-	-	-	-	-	-	-	-	-	-	-	-	-	-	-	-
	218	트리클로로에틸린	-	-	-	-	-	-	-	-	-	-	-	-	-	-	-	-	-	-	-
	219	벤자린과 그 염	-	-	-	-	-	-	-	-	-	-	-	-	-	-	-	-	-	-	-
	220	염소화비페닐	-	-	-	-	-	-	-	-	-	-	-	-	-	-	-	-	-	-	-
	221	풀다린	-	-	-	-	-	-	-	-	-	-	-	-	-	-	-	-	-	-	-
	222	풀루엔2,4-디아소사이아네이트	-	-	-	-	-	-	-	-	-	-	-	-	-	-	-	-	-	-	-
	223	페놀	-	-	-	-	-	-	-	-	-	-	-	-	-	-	-	-	-	-	-
	224	포름알데히드	-	-	-	-	-	-	-	-	-	-	-	-	-	-	-	-	-	-	-
	299	기타유기용제	-	-	-	-	-	-	-	-	-	-	-	-	-	-	-	-	-	-	-
	301	니켈(카르보니의일 포함)	-	-	-	-	-	-	-	-	-	-	-	-	-	-	-	-	-	-	-
	302	망간	-	-	-	-	-	-	-	-	-	-	-	-	-	-	-	-	-	-	-
	305	수은	-	-	-	-	-	-	-	-	-	-	-	-	-	-	-	-	-	-	-
	306	연(4일월연 포함)	-	-	-	-	-	-	-	-	-	-	-	-	-	-	-	-	-	-	-
	307	도산화비나iton	-	-	-	-	-	-	-	-	-	-	-	-	-	-	-	-	-	-	-
	308	카드뮴	-	-	-	-	-	-	-	-	-	-	-	-	-	-	-	-	-	-	-
	309	크롬	-	-	-	-	-	-	-	-	-	-	-	-	-	-	-	-	-	-	-
	399	기타중금속	-	-	-	-	-	-	-	-	-	-	-	-	-	-	-	-	-	-	-
	401	벤자린(염산염 포함)	-	-	-	-	-	-	-	-	-	-	-	-	-	-	-	-	-	-	-
	402	불화수소	-	-	-	-	-	-	-	-	-	-	-	-	-	-	-	-	-	-	-
	403	시안화합물	-	-	-	-	-	-	-	-	-	-	-	-	-	-	-	-	-	-	-
	404	아황산나트륨	-	-	-	-	-	-	-	-	-	-	-	-	-	-	-	-	-	-	-
	405	암모니아	-	-	-	-	-	-	-	-	-	-	-	-	-	-	-	-	-	-	-
	407	염소	-	-	-	-	-	-	-	-	-	-	-	-	-	-	-	-	-	-	-
	409	염화수소	-	-	-	-	-	-	-	-	-	-	-	-	-	-	-	-	-	-	-
	410	일산화탄소	-	-	-	-	-	-	-	-	-	-	-	-	-	-	-	-	-	-	-
	411	질산	-	-	-	-	-	-	-	-	-	-	-	-	-	-	-	-	-	-	-
	416	포스噤	-	-	-																

1. 건강관리구분 ·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적합성 평가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적합여부(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0 필요없음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1 건강상담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2 보호구착용	
C _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3 추적검사 4 근무중치료 5 근로시간 단축	
D 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6 작업전환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D ₂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7 근로금지 및 제한	
D _N	질병의 소견이 있어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8 직업병확진의뢰안내 (건강진단기관이 안내) 9 기타	라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R	건강진단 1차결과결과에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2.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배치전]

사업장명 : 아이언에이지(주)

건강진단실시기간 : 2023-02-27 ~ 2023-02-27

공정	성 명	성 별	연 령	근 속 년 수	유해인자	생물학적노출지표 (참고치)	건 강 구 분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	업무 수행 적합 여부
기타기계	민경환	남	32	0	◎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소음/ 자외선/ 진동[그밖의진동기계, 기구사용작업]/ ◎ [호흡기계] 광물성분진 / 산화철(분진 및 흙)/ 용접흄/		A	정상	필요없음	가
기타철골	민순규	남	67	0	◎ 광물성분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 및 흙)/ 용접흄/ 자외선/ 진동[그밖의진동기계, 기구사용작업]/ ◎ [이비인후계] 소음/		C2	경도 제한성환기장애 흉부방사선검사(직접) : 정상(A) 노력성폐활량(FVC) : 3.58 예측치대비 노력성폐활량 : 67.0 일초량(FEV1) : 2.85 예측치대비 일초량(FEV1%) : 64.0 일초율 : 79.6 PEF : 8.99 기류용적폐곡선 : 비정상 정상	보호구착용 (보호구 착용철저)	나

1. 건강관리구분 ·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적합성 평가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적합여부(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2 보호구착용 3 추적검사 4 균무증치료 5 근로시간 단축 6 작업전환 7 근로금지 및 제한 8 직업병확진의뢰안내 (건강진단기관이 안내) 9 기타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C _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 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다 건강장애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D ₂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_N	질병의 소견이 있어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라 건강장애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2.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배치전]

사업장명 : 아이언에이지(주)

건강진단실시기간 : 2023-02-27 ~ 2023-02-27

공정	성 명	성 별	연 령	근 속 년 수	유해인자	생물학적노출지표 (참고치)	건 강 구 분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	업무 수행 적합 여부
							C1	소음(감각신경성): 난청주의 [2차] 기도청력 500Hz(좌) : 10 [2차] 기도청력 1000Hz(좌) : 10 [2차] 기도청력 2000Hz(좌) : 5 [2차] 기도청력 3000Hz(좌) : 20 [2차] 기도청력 4000Hz(좌) : 25 [2차] 기도청력 6000Hz(좌) : 35 [2차] 기도청력 500Hz(우) : 10 [2차] 기도청력 1000Hz(우) : 5 [2차] 기도청력 2000Hz(우) : 10 [2차] 기도청력 3000Hz(우) : 15 [2차] 기도청력 4000Hz(우) : 50 [2차] 기도청력 6000Hz(우) : 60 [2차] 골전도청력 3000Hz(좌) : 10 [2차] 골전도청력 4000Hz(좌) : 25 [2차] 골전도청력 3000Hz(우) : 10 [2차] 골전도청력 4000Hz(우) : 40 [2차] 기도청력3분법(좌) : 8.3 [2차] 기도청력3분법(우) : 8.3 [2차] 팀파노메트리검사(좌) : B 형 [2차] 팀파노메트리검사(우) : As 형	보호구착용 (소음(난청주의)): 보호구착용철저/추적관찰 / [우측]	나
기타기계	박희총	남	64	0	광물성분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 및 흙)/ 소음/ 용접흄/ 자 외선/ 진동[그밖의진동기 계, 기구사용작업]/		A	정상	필요없음	가
총 3 명 중 1 명 A 또는 B 정상자										
2023년 03월 17일										
건강진단 기관명 :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건강진단 의사명 : 장용석 (서명  <td data-kind="ghost"></td>										

※ 업무수행적합여부: 가.현재조건하에서 현 작업가, 나.일정조건하에서 현 작업가, 다.한시적으로 현 작업불가,
라.지속적으로 현 작업불가

1. 건강관리구분 ·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적합성 평가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적합여부(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필요없음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건강상담 보호구착용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추적검사 근무중치료 근로시간 단축	다 건강장애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C _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관찰자)	작업전환 근로금지 및 제한 직업병학진의뢰안내 (건강진단기관이 안내) 기타	라 건강장애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D 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₂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_N	질병의 소견이 있어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2.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유해요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예방
유기화합물	눈, 피부, 호흡기 절막의 자극 증상 -눈도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마취되기도 전 증상이 나타난다. 즉, 어지러움, 두통, 도취감(흥분), 피로, 졸음, 구역, 지나친 상식, 가슴통증 등에 이어 흡수도가 증가되며 점차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마성 피로 시에는 감각, 혼동, 운동기능 이상, 기억력저하, 피로, 신경질, 불안 등의 신경계통의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통은 필요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마개 혹은 뚜껑으로 막아 놓는다. -작업장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복으로 깨끗이 세면을 한다. -인체에 유기용제 중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및 작업복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수은	식욕부진, 두통, 저신권증, 경미한 몸 떨림, 불안, 호흡곤란, 화학성 폐렴, 입술부위의 창백, 메스꺼움, 설사,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고 피부의 알레르기 기여, 기억상실, 우울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피부흡수를 통해 전신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용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금속류	연이 체내에 흡수되면 초기에는 피로를 느끼고, 잠이 잘 안오며 꿀다리의 통증, 식욕감퇴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계속하여 체내에 흡수되는 납이 증가하면 갑작스런 피로, 체중증가,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며, 어지럼과 속발에 힘이 악해지는 증세가 올 수 있음. -4-암킬염화물은 무기연화물보다 독성이 강하며, 호흡기로 흡수되어 주로 중추신경계통에 작용하고 간과 肺, 신장, 뇌 등에 장해를 준다. -급성증상: 무기연화물은 달리 중추신경계의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노출을 수 있다. 일 후엔 불안, 용분, 근육연挛, 망상, 환상이 일어나고 혈압저하, 맥박수가 감소한다.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고 흡연, 과음을 삼가며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함. -개인위생(식사전 세수, 방독마스크 착용, 작업복 세탁 등)을 철저히 지키고 보조적으로 납이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화기접근을 금지한다. -느낌으로 유모를 매일 1회 이상 접촉한다. -작업으로 대체로 실시(1일 노출시간을 가급적 단축)한다.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ガス용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등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1. 환경영역자	1. 칸들름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신장장애,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폐기증을 일으키며 골격계장애와 심혈관계 장해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침, 골물, 후각기능, 척추통, 척수부진, 구토, 설사,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고, 앞이나 송곳니, 저온부에 연한 황색의 환상 색소침착을 볼 수 있다.. 2. 망간 -수면방해, 행동이상, 신경증상, 발음부정증 등 3. 오산황 -눈물이 나옴, 비염, 인두염, 기관지염, 천식, 흉통, 폐염, 폐부종, 폐부습진 등 4. 니켈 -폐암, 비강암, 눈의 자극증상, 발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경련, 정신착란 등	-작업장의 공기 중 카드뮴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작업장을 청결하게 한다. -작업장 내에서 식사나 흡연은 절대 금물이며 작업복은 자주 갈아입는다. -적절한 보호구(방진마스크, 보호장갑 등)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산 및 알카리류	1. 산 -심한 호흡기 자극으로 일시적으로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난다. -피부를 일부虱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 -화상을 입을 수 있다. 2. 알카리류 -장기 노출 시에는 치아부식증 및 기관지 등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수된 보호의, 고무장갑, 보호면을 착용하여 피부접촉을 방지한다. -보호용 안경을 착용한다.
가스상 물질류	1. 가스상 -대부분 가스상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들어와 건강장해를 일으키며 이외에도 피부나 경구적으로도 침투될 수 있는 물질이 많고 일반적으로 신경 장해(마취작용), 피부염 등이 일어날 수 있다. -호흡기 기관 동안 많은 양에 노출되면 눈, 코, 목, 피부 및 점막 등을 자극 한다. 2. 물질류 -기관지염, 폐염, 접촉성 피부염, 기침, 호흡곤란, 폐의 육아종 형성	-화기에 주의한다. -작업환경에서 빛·생한 가스, 흡, 분진 등을 유해가스용 방독마스크, 보호의, 장갑 등을 사용하고 필요 시, 세수, 샤워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킨다. -유해물 등이 저장장소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 관리한다.
제28에 의한 학기 대물질	비Felol -기관지염, 폐염, 접촉성 피부염, 기침, 호흡곤란, 폐의 육아종 형성 비소 -접촉성 피부염, 비증격 점막의 폐사, 다발성신경염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환기를 철저히 한다.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호흡기 청결,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2. 분진	1. 광물성분진 -진폐증의 자·타각증상이나 소견은 호흡기계에서 비롯된 호흡 곤란, 기침, 닦액과다, 흉통, 혈涕,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2. 면분진 -특정적인 자각증상인 월요증상(Monday disease)은 흥분압박감, 가슴통증, 호흡곤란, 기침 등인데 특히 월요일에 심하게 주말에 이를 수록 점차 경미하여 진다(월요일에는 면분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석면 -만성장해로서는 석면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침, 닦 등 기관지염 증상을 수반하고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을 호소하며, 폐암 및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발진 공정의 습식화 및 분진억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발진원 포위 격리 및 밀폐 등을 실시한다.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3. 물리적 인자	1. 소음 -불쾌감, 정신피로를 발생시켜서 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작업능률을 저하, 청력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 -청력장해는 일시적인 난청이 경우와 영구적으로 오는 난청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영구적인 난청(직업성난청)은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때 회복되지 않은 내이성 난청의 일종이며, 나중에는 말소리까지도 침범 당해 잘 듣지 못한다. 2. 진동 -국소진동이 직접 수지부에 가하여 저 수지부 혈관 및 관절에 기계적 공진현상을 일으켜 말초장해를 유발하며 중증, 말초, 골판질 장해를 일으킨다. 즉 손가락의 장백현상, 손가락의 감각이상, 투통, 감작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3. 자외선 -피부의 흥분현상, 색소침착, 각막의 부종과 폐사, 피부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송진 시에 발생되는 자외선은 각막결막염과 노출된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며, 불활성가스 또는 금속 아크용접 등은 강력한 자외선을 발생하며 눈 및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일이 많다. 4. 이상기압 -고압에서는 가스가 혈액 속에 용해되어 있다가 급격한 감압으로, 특히 질소가 혈관과 조직 내에 기포를 형성하고 혈관이 약한 부위에 따라 피부의 가려움 및 근육통, 관절통, 호흡곤란, 심장장애, 반신불수 등을 일으킨다.	-소음발생이 큰 기계, 기구를 교체하거나 격리시킨다. -발생원에 대한 방음흡음시설 설치(칸막이 등) 등을 한다. -작업 시에는 귀마개, 귀덮개 등 차음보호구 착용을 생활화 한다.
4. 야간작업	-야간작업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생체리듬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소화성궤양과 같은 위장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우방암과의 관련으로 인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A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요법을 실천한다. -고대근무 일정을 바탕화한 형태로 설계하며, 필요시 야간작업 중에 수면 시간을 제공한다. -심혈관질환, 축추신경장해, 조혈기계질환, 생식기계 기능이상 등이 있는 경우 야간작업 배치 전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배전

건강진단개인표

특수 / 배치전 / 수시 / 임시 / 연구활동 / 직종별

사업체명	아이언에이지(주)							현작업부서	기계					
근로자주소	(384-7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 602(주)에스에프에이							성명	박희충					
지방사무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업종	표면처리강제외			노출기간	0년 0개월					
현작업내용	기타			현직전입일	20230227		사원번호		1일노출시간					
주민등록번호	590221 - 1*****			나이	만 64 세	성별	남	전화번호	/010-3586-3406	입사년월일	20230227			
과 거 직 력	작업공정명		근무년수	기 간		문 진 진 찰	특이사항없음		진 찰	안 과	특이사항없음			
	무		년							이비인후	특이사항없음			
			년							피 부	특이사항없음			
			년							치 아	특이사항없음			
취급 물질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산화철(분진 및 흠)//소음//진동[그밖의진동기계, 기구사용작업]//자외선//광물성분진//용접흄//													
자타각증상	이상증상 없음													
일반 건강진단 항목								혈액형			색신			
항목	신장 (Cm)	체중 (Kg)	비만도	시력		청력(1000Hz)	혈압(mmHg)	요검사			빈혈검사		공복 혈당	총콜레스테롤
				좌	우	좌(dB)	우(dB)	최고	최저	요당	요단백	요점혈		
참고치						~29	~29	120미만	80미만	음성	음성	5.5~7.5	남 39~50% 여 36~47%	남 13~16.5 g/dL 여 12~15.5 g/dL
금회	157.2	68.4	과체중/27.7		15	20	126	78						
항목	간기능검사(U/L)		심전도 검사				흉부방사선검사번호			561				
참고치	GOT	GPT					r-GTP	판독의사면허번호			* 하단 별도기재			
금회	400이하	350이하	11~63	정상				정상, 비활동성				정상(A)		
치과소견											치과의사			
건강진단 항목														
검사항목	검사결과			참고치			년			년				
기도청력 500Hz(좌)	20	dB	-10~29											
기도청력 2000Hz(좌)	25	dB	-10~29											
기도청력 3000Hz(좌)	35	dB	-10~39											
기도청력 4000Hz(좌)	35	dB	-10~39											
기도청력 6000Hz(좌)	50	dB	-10~39											
기도청력 500Hz(우)	20	dB	-10~29											
기도청력 2000Hz(우)	25	dB	-10~29											
기도청력 3000Hz(우)	35	dB	-10~39											
기도청력 4000Hz(우)	35	dB	-10~39											
기도청력 6000Hz(우)	30	dB	-10~39											
기도청력3분법(좌)	20	dB	0~24											
기도청력3분법(우)	21.7	dB	0~24											
이경검사 (좌)	정상													
이경검사 (우)	정상													
악력검사(좌)	37.2	Kg	~											
악력검사(우)	43.2	Kg	~											
손톱압박검사	정상													
통각	정상			정상										
진동각	정상			정상										
노력성폐활량(FVC)	3.12	L												
예측치대비 노력성폐활량	81.0	%												
일초량(FEV1)	2.56	L												

1. 건강관리구분 ·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적합성 평가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적합여부(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0 필요없음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1 건강상담 2 보호구착용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3 추적검사 4 근무증치료 5 근로시간 단축	다 건강장애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C _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6 작업전환 7 근로금지 및 제한 8 직업병학진의뢰안내 9 기타	라 건강장애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D 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₂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_N	질병의 소견이 있어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2.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유해요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예방	
유기화합물	눈, 피부, 호흡기, 점막의 자극 증상 동물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마취되기전 증상이 나타난다. 즉, 어지러움, 두통, 두꺼운(분분), 피로, 졸음, 구역, 지나친 상실, 가슴통증에 이어 흡수증도가 증가되며 점차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만성 피로 시에는 갑작 혹은 운동기동 이상, 기억력저하, 피로, 신경질, 불안 등의 신경계통의 장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통은 필요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마개 혹은 뚜껑으로 막아 놓는다. -작업장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을 섭취를 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세면을 한다. -인체에 유기용제 중기기 흡수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및 작업복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수은	식욕부진, 두통, 전신권태, 경미한 몸 떨림, 불안, 호흡곤란, 화학성 폐렴, 입술부위의 창백, 메스꺼움, 설사, 청진장애 증세를 보이고, 피부의 알레르기 기화, 기억상실, 우울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피부흡수를 통해 전신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용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금속류	연이 체내에 흡수되면 초기에는 피로를 느끼고, 잠이 잘 안오며 팔, 다리의 통증, 심육간판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계속하여 체내에 흡수되는 날이 증가하면 합자기 배가 아프거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며, 어지럼고 손발에 힘이 약해지는 증세가 올 수 있다. -4일기기로는 무기화합물을 흡수되는 날이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질증증상: 무기연과는 달리 증증증상이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노출되는 날 후에는 불안, 피로, 근육면축, 맹성, 환상이 일어나고 혈압저하, 체질저하, 맥박수가 감소한다.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고 흡연, 과음을 삼가며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라. -개인워싱(식사전 세수, 방독마스크 착용, 작업복 세탁 등)을 철저히 치고 개인적으로 날이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화기접근을 금한다. -노설의 우무를 매일 1회 이상 접촉한다. -작업은 교대로 실시(1일 노출시간을 가급적 단축)한다.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ガ스용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등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1. 환경정기자	카드뮴 4. 알루미늄 망간 오산화바나듐 진동 니켈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신장장애,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폐기종을 일으키며 물결제장애와 신혈관계 장애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침, 가래, 콧물, 후각이상, 식욕부진, 구토, 설사,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고 앞이나 송곳니, 치은부에 연한 황색의 흰상 색소침착을 볼 수 있다.. -수면방해, 행동이상, 신경증상, 발음부정확 등 -눈물이 나옴, 비염, 인두염, 기관지염, 천식, 흥통, 폐염, 폐부종, 피부습진 등 -폐암, 비강암, 눈의 자극증상, 발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경련, 정신착란 등	-작업장의 공기 중 카드뮴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작업장을 철결하게 한다. -작업장 내에서 식사나 흡연은 절대 금물이며 작업복은 자주 갈아입는다. -적절한 보호구(방진마스크, 보호장갑 등)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산 및 일카리류	-심한 호흡기 자극으로 일시적으로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난다. -피부를 비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 -경기 노출 시에는 첫아부식증 및 기관지 등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수된 보호의, 고무장갑, 보호면을 착용하여 피부접촉을 방지한다. -보호용 안경을 착용한다.	
가스상 물질류	-대부분 가스상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들어와 건강장애를 일으키며 이외에도 피부나 경구적으로도 침입될 수 있는 물질이 많고 일반적으로 시경 장해(마취작용), 피부염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노출되면 눈, 코, 목, 피부 및 점막 등을 자극 한다.	-화기에 주의한다. -작업환경에서 불생한 가스, 흙, 분진 등을 유해가스용 방독마스크, 보호의, 상감 등을 착용하고 필요 시 세수, 샤워 등 개인워싱을 잘 지킨다. -유해를 등이 저장장소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 관리한다.	
제88조에 의한 해가 대상집	밸롭름 비소	-기관지염, 폐염, 접촉성 피부염, 기침, 호흡곤란, 폐의 육아종 형성 -접촉성 피부염, 비증격 접막의 피사, 다발성신경염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환기를 철저히 한다.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2. 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석면	-진폐증의 자·타각증상이나 소견은 호흡기계에서 비롯된 호흡 곤란, 기침, 담액과다, 흥통, 혈痰,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징적인 자각증상인 월요증상(Monday disease)은 흥부압박감, 가슴통증, 호흡곤란, 기침 등인데 특히 월요일에 심하여 주말에 이를 수록 점차 경미하여 진다(월요일에는 면분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성장해로서는 석면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침, 담 등 기관지염 증상을 수반하고 호흡곤란, 삼계항진 등을 호소하며, 폐암 및 중증폐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발진 공정의 습식화 및 분진억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발진원 포위 격리 및 밀폐 등을 실시한다.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3. 소음	진동	-불쾌감, 청진피로를 발생시켜 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작업능률을 저하, 청력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청력장애는 일시적인 난청인 경우와 영구적으로 오는 난청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영구적인 난청(직업성난청)은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때 회복되지 않는 내이성 난청의 일종이며, 내종에는 말소리까지도 침범 당하여 잘 듣지 못한다.	-방진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한다. -작업 후 목욕을 실시한다. -작업복은 작업 시에만 착용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갈아 입는다. -석면취급 근로자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한다.
물리적 인자	진동 자외선 이상 기합	-국소진동이 직접 수지부에 가하여져 수지부 혈관 및 관절에 기계적 공진현상을 일으켜 말초장해를 유발하며 주증, 말초, 관절장해를 일으킨다. 즉 손가락의 장백현상, 손가락의 감각이상, 투통, 감작 등의 상상을 일으킨다. -피부의 흥반현상, 색소침착, 각막의 부종과 피사, 피부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용접 시에 발생되는 자외선은 각막결막염과 노출된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며, 불활성가스 또는 금속 아크용접 등은 강력한 자외선을 발생하여 눈 및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일이 많다. -고압에서는 가스가 혈액 속에 용해되어 있다가 급격한 감압으로 특허질소가 혈관과 조직 내에 기포를 형성하고 혈관이 약한 부위에 따라 피부의 가려움 및 근육통, 관절통, 호흡곤란, 시력장애, 반신불수 등을 일으킨다.	-진동흡수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공구의 보수관리를 철저히 한다. -작업시간을 단축한다. -유해광선 장해를 예방하는 근보원칙을 박사선, 방선원의 격리, 살란선, 무선방지 등 방사선의 피폭방지에 있어 월터링뱃지(film badge) 또는 포켓선량계로 피폭량을 측정한다. -피부보호의, 보호안경, 보호장갑, 안전모(방열용)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4. 야간작업		-야간작업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생체리듬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소화성궤양과 같은 위장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방암과의 관련으로 인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A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법을 실천한다. -교대근무 일정을 바람직한 형태로 설계하며, 필요시 야간작업 중에 수면시간을 제공한다. -심혈관질환, 중추신경장해, 조혈기계질환, 생식기계 기능이상 등이 있는 경우 야간작업 배치 전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검사항목		검사결과		참고치	년	년	
판정	소 견	조 치	유해인자			건강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A	정상	건강양호	광물성분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 및 흙)/ 용접흄/ 소음/ 자외선/ 진동[그밖의진동기계, 기구사용작업]/			A	가
건강진단일자	2023-02-27	건강진단기관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경북의원	건강진단의사	박동준	(서명 )	
판독의사	흉부 - 신경자 114호			근로자	박희총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차기 건강진단예정일자는 2023년 08월 27일 이내이며, 동 일자는 귀하가 근무하는 작업공정에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053-856-121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적합성 : 가.현조건하에서 현작업가능 / 나.일정조건하에서 현작업가능 / 다.일정기간 현작업불가 / 라.영구적으로 현작업 불가

1. 건강관리구분 ·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적합성 평가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적합여부(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0 필요없음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1 건강상담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2 보호구착용	
C _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3 추적검사	
D 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4 근무중치료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다른로 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D ₂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5 근로시간 단축	
D _N	질병의 소견이 있어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6 작업전환	
R	건강진단 1차결과결과에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7 근로금지 및 제한 8 직업병확진의뢰안내 (건강진단기관이 안내) 9 기타	라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2.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건강진단개인표

특수 / 배치전 / 수시 / 임시 / 연구활동 / 직종별

사업체명	아이언에이지(주)							현작업부서	기계					
근로자주소	(384-7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 602(주)에스에프에이							성명	민경환					
지방사무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업종	표면처리강제외			노출기간	0년 0개월					
현작업내용	기타			현직전입일	20230227		사원번호		1일노출시간					
주민등록번호	911007 - 1*****			나이	만 31	세	성별	남	전화번호	/010-2413-7137	입사년월일	20230227		
과 거 직 력	작업공정명		근무년수	기 간		문 진 진 찰	특이사항없음			진 찰	안 과	특이사항없음		
	건설		3년								이비인후	특이사항없음		
			년				특이사항없음				피 부	특이사항없음		
			년				특이사항없음				치 아	특이사항없음		
취급 물질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산화철(분진 및 흠)//소음//진동[그밖의진동기계, 기구사용작업]//자외선//광물성분진//용접흄//													
자타각증상	이상증상 없음													
일반 건강진단 항목							혈액형			색신				
항목	신장 (Cm)	체중 (Kg)	비만도	시력		청력 (1000Hz)	혈압 (mmHg)	요검사			빈혈검사			
				좌	우	(dB)	(dB)	최고	최저	요당	요단백	요장혈	요pH	혈구용적치
참고치				~29	~29	120미만	80미만	음성	음성	음성	5.5~7.5	남 39~50% 여 36~47%	남 13~16.5 g/dL 여 12~15.5 g/dL	
금회	177.5	81.1	과체중/25.7		15	15	134	82				100미만	200미만	
항목	간기능검사(U/L)		심전도 검사					흉부방사선검사번호			560			
참고치	GOT	GPT						r-GTP	판독의사면허번호			* 하단 별도기재		
금회	400이하	350이하	11~63	정상					정상, 비활동성					
치과소견	정상(A)										치과의사			
건강진단 항목														
검사항목		검사결과			참고치						년	년		
기도청력 500Hz(좌)		15	dB			-10~29								
기도청력 2000Hz(좌)		15	dB			-10~29								
기도청력 3000Hz(좌)		20	dB			-10~39								
기도청력 4000Hz(좌)		15	dB			-10~39								
기도청력 6000Hz(좌)		20	dB			-10~39								
기도청력 500Hz(우)		15	dB			-10~29								
기도청력 2000Hz(우)		20	dB			-10~29								
기도청력 3000Hz(우)		20	dB			-10~39								
기도청력 4000Hz(우)		25	dB			-10~39								
기도청력 6000Hz(우)		20	dB			-10~39								
기도청력3분법(좌)		15	dB			0~24								
기도청력3분법(우)		16.7	dB			0~24								
이경검사 (좌)	정상													
이경검사 (우)	정상													
악력검사(좌)	33.5	Kg			~									
악력검사(우)	30.1	Kg			~									
손톱압박검사	정상													
통각	정상						정상							
진동각	정상						정상							
노력성폐활량(FVC)	3.58	L												
예측치대비 노력성폐활량	67.0	%												
일초량(FEV1)	2.85	L												

1. 건강관리구분 ·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적합성 평가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적합여부(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2 보호구착용 3 추적검사 4 근무증치료 5 근로시간 단축 6 작업전환 7 근로금지 및 제한 8 직업병학진의뢰안내 9 기타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C _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라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D 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₂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_N	질병의 소견이 있어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2.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유해요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예방
1. 화학적인자	눈, 피부, 호흡기 접막의 자극 증상 - 홍도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마취되기전 증상이 나타난다. 즉, 어지러움, 두통, 도취감(홍분), 피로, 졸음, 구역, 지나친 상갈, 가슴통증에 이어 흡수도가 증가되며 접촉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 마성 폐로 시에는 감각 호흡 운동기능 이상, 기억력저하, 피로, 신경질, 불안 등의 신경계통의 장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통은 필요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마개 혹은 뚜껑으로 막아 놓는다. - 작업장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으로 감아입고 세면을 한다. - 이차에 유기용제 증기기 흡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및 작업복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식욕부진, 두통, 전신倦怠, 경미한 몸 떨림, 불안, 호흡곤란, 화학성 폐렴, 입술부위의 창백, 메스꺼움, 설사,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고 피부의 알레르기화, 기억丧失, 우울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피부흡수를 통해 전신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 유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연. 4 알레르겐 - 연이 체내에 흡수되면 초기에는 피로를 느끼고, 잠이 잘 안오며 팔다리의 통증, 식욕감퇴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계속하여 체내에 흡수되는 날이 증가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며, 어지럼고 손발에 힘이 약해지는 증세가 올 수 있다. - 4악질연은 무기연화물보다 노동성이 강하며, 호흡기로 흡수되어 주로 중증신경계통에 작용하고 간과 갈수, 심장, 뇌 등을 장해를 준다. - 평성증상: 무기연과는 달리 중증신경계의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노출 수 있는 일 후에는 불안, 홍분, 근육연족, 망상, 환상이 일어나고 혈압저하, 체질저하, 맥박수가 감소한다.	-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고 흡연, 과음을 삼가며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는다. - 개인위생(식사전 세수, 방독마스크 착용, 작업복 세탁 등)을 철저히 하고 그로인으로 남아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 화기 접근을 금한다. - 노출의 유무를 매일 1회이상 점검한다. - 작업은 교대로 실시(1일 노출시간을 가급적 단축)한다. -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카스용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화, 보호의 등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카르뮴 -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신장장애,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폐기증을 일으키며 골격계장애와 신혈관계 장해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가진 가래, 콧물, 후각이상, 식욕부진, 구토, 설사,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고 앞이나 송곳니, 치수부에 연한 황색의 환상 색소침착을 볼 수 있다.	- 작업장의 공기 중 카드뮴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작업장을 철저하게 한다. - 작업장 내에서 식사나 흡연은 절대 금물이며 작업복은 자주 갈아입는다. - 척철한 보호구(방진마스크, 보호장갑 등)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망간 - 수면방해, 행동이상, 신경증상, 발음부정확 등 - 뉴米粉이 나옴, 비염, 인두염, 기관지염, 천식, 흉통, 폐염, 폐부종, 피부습진 등	-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 환기를 철저히 한다. -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오산합 - 평가는 기간 동안 많은 양에 노출되면 눈,코, 목, 피부 및 점막 등을 자극 한다.	
	니켈 - 폐암, 비강암, 눈의 자극증상, 발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경련, 정신착란 등	
	산 및 일카리륨 - 심한 호흡기 자극으로 일시적으로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난다. - 피부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 - 장기 노출 시에는 치아부식증 및 기관지 등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길 수 있다.	- 마스크를 착용한다. - 방수된 보호의, 고무장갑, 보호면을 착용하여 피부접촉을 방지한다. - 보호용 안경을 착용한다.
	가스상 물질류 - 대부분 가스상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들어와 건강장해를 일으키며 이외에도 피부나 경구적으로도 철입될 수 있는 물질이 많고 일반적으로 신경 장해(마취작용), 피부염 등이 일어날 수 있다. - 물은 기간 동안 많은 양에 노출되면 눈,코, 목, 피부 및 점막 등을 자극 한다.	- 화기에 주의한다. -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가스, 흡, 분진 등을 유해가스용 방독마스크, 보호의, 장갑 등을 착용하고 필요 시, 세수, 샤워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킨다. - 유해물 등이 저장장소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 관리한다.
제88 조에 의한 화학물질	비릴루 - 기관지염, 폐염, 접촉성 피부염, 기침, 호흡곤란, 폐의 육아종 형성	-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 환기를 철저히 한다. -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2. 분진	광물성분진 - 특징적인 자각증상인 월요증상(Monday disease)은 흙부암박감, 가슴통증, 호흡곤란, 기침 등인데 특히 월요일에 심하여 주말에 이를 수축 점차 경미하여 전자(월요일에는 면분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발진 공정의 습습화 및 분진억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 발진원 포위 격리 및 밀폐 등을 실시한다. -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면분진 - 만성장해로서는 석면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침, 담 등 기관지염 증상을 수반하고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을 호소하며, 폐암 및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 방진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한다. - 작업 후 목욕을 실시한다. - 작업복은 작업 시에만 착용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갈아 입는다. - 석면취득 근로자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한다.
	석면 - 불쾌감, 저신피로를 발생시켜 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작업능률을 저하, 청력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 - 청력장해는 일시적인 난청인 경우와 영구적으로 오는 난청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영구적인 난청(직업성난청)은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때 회복되지 않는 내인성 난청의 일종이며, 나중에는 말소리까지도 침병 당하여 잘 듣지 못한다.	- 소음발생이 큰 기계, 기구를 교체하거나 격리시킨다. - 발생원에 대한 방음흡음시설 설치(칸막이 등) 등을 한다. - 작업 시에는 귀마개, 귀덮개 등 차음보호구 착용을 생활화 한다.
3. 물리적 인자	진동 - 극소진동이 직접 수지부에 가하여서 수지부 혈관 및 관절에 기계적 공진현상을 일으켜 말초장해를 유발하며, 중증, 말초, 골관절 장해를 일으킨다. 즉 손가락의 장백현상, 손가락의 감각이상, 투통, 감자 등의 통증을 일으킨다.	- 진동흡수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 보호구의 보수관리를 철저히 한다. - 작업시간을 단축한다.
	자외선 - 피부의 흥반현상, 색소침착, 각막의 부종과 괴사, 피부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용접 시에 발생되는 자외선은 각막경막염과 노출된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며 불활성기수 또는 금속 아크용접 등은 강력한 자외선을 발생하여 눈 및 피부에 화상을 입힐는 일이 많다.	- 유해광선 장해를 예방하는 기본원칙은 방사선 발생원의 격리, 산란선 누설방지 등 방사선의 피폭방지에 있어 필름뱃지(film badge) 또는 포켓선량계로 피폭량을 측정한다. - 피부보호의, 보호안경, 보호장갑, 안전모(방열용)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이상 기합 - 고압에서는 가스가 혈액 속에 용해되어 있다가 급격한 감압으로 특히 저온으로 혈관과 조직 내에 기포를 형성하고 혈관이 약한 부위에 따라 피부의 가려움 및 근육통, 관절통, 호흡곤란, 시력장애, 반신불수 등을 일으킨다.	- 수심에 따른 체재시간의 한도와 적절한 감압법을 염수하여야 한다. - 고기압 환경에 부적절한 고령자, 결핵천식 등의 만성호흡기 질환자, 심臟病자, 체계 이상 자, 만성부비강염, 중이염, 골관절 이상 자 등은 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야간작업	- 야간작업은 뇌신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생체리듬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소화성궤양과 같은 위장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방암과의 관련으로 인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A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 뇌신혈관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요법을 실천한다. - 고근근육의 일정을 바람직한 형태로 설계하여, 필요시 야간작업 중에 수면 시간을 제공한다. - 생활관절질환, 중추신경장애, 혈관질환, 생식기계 기능이상 등이 있는 경우 야간작업 배치 전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검사항목		검사결과		참고치	년	년
예측치대비 일초량(FEV1%)		64.0	%			
일초율		79.6	%			
PEF		8.99				
기류용적폐곡선		비정상				
판정	소 견		조 치	유해인자	건강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C2	[호흡기계] 경도 제한성환기장애 정상		보호구 착용철저 건강양호	광물성분진/ 산화철(분진 및 흄)/ 용접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을/ 소음/ 자 외선/ 진동[그밖의진동기계, 기구 사용작업]/	C2 A	나
건강진단일자	2023-02-27	건강진단기관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경북의원	건강진단의사	장용석	(서명)
판독의사	흉부 - 신경자 114호			근로자	민경환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차기 건강진단예정일자는 2023년 08월 27일 이내이며, 동 일자는 귀하가 근무하는 작업공정에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053-856-121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적합성 : 가.현조건하에서 현작업가능 / 나.일정조건하에서 현작업가능 / 다.일정기간 현작업불가 / 라.영구적으로 현작업 불가

1. 건강관리구분 ·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적합성 평가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적합여부(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2 보호구착용 3 추적검사 4 균무증치료 5 근로시간 단축 6 작업전환 7 근로금지 및 제한 8 직업병확진의뢰안내 9 기타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다 건강장애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C _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라 건강장애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D 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₂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_N	질병의 소견이 있어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2.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유해요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예방	
1. 환경성전자	유기화합물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통은 필요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마개 혹은 뚜껑으로 막아 놓는다. -작업장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세면을 한다. -인체에 유기용제 증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및 작업복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수은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통은 필요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마개 혹은 뚜껑으로 막아 놓는다. -작업장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세면을 한다. -인체에 유기용제 증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및 작업복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금속류	-용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연 4 알루미늄	-용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카드뮴	-용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망간	-용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오산화 바나듐	-용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니켈	-용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산 및 알카리류	-수면방해, 행동이상, 신경증상, 밤을수정화 등 -눈물이나움, 비염, 인두염, 기관지염, 천식, 흥통, 폐부종, 피부습진 등 -폐암, 비강암, 눈의 자극증상, 발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경련, 정신착란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화기류를 철저히 한다. -작업장 내에서 식사나 흡연은 절대 금물이며 작업복은 자주 갈아입는다.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2. 분진	가스상 물질류	-신한 호흡기 자극으로 일시적으로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난다. -피부를 비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장기 노출 시에는 치아부식증 및 기관지 등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수된 보호의, 고무장갑, 보호면을 착용하여 피부접촉을 방지한다. -보호용 안경을 착용한다.
	영제83조에 의한 가스류	-대부분 가스상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들어와 건강장애를 일으키며 이외에도 피부나 경구적으로도 침입될 수 있는 물질이 많고 일반적으로 신경 장해(마취작용), 피부염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에 노출되면 눈, 코, 목, 피부 및 점막 등을 자극한다.	-화기에 주의한다.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가스 흙, 분진 등을 우거가스용 박동마스크, 보호의, 장갑 등을 착용하고 필요 시, 세수, 샤워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킨다. -유해물 등이 저장장소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 관리한다.
	비릴루	-기관지염, 폐염, 접촉성 피부염, 기침, 호흡곤란, 폐의 육아종 형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환기를 철저히 한다.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비소	-접촉성 피부염, 비중격 점막의 괴사, 다발성신경염 등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광물성분진	-진폐증의 자·타각증상이나 소견은 호흡기계에서 비롯된 호흡 곤란, 기침, 담액과다, 흥통, 혈달,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발진 공정의 습식화 및 분진억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3. 물리적 인자	면분진	-특징적인 자각증상인 월요증상(Monday disease)은 흥부압박감, 가슴통증, 호흡곤란, 기침 등인데 특히 월요일에 심하여 주말에 이를수록 점차 경미하여 진다(월요일에는 면분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발진원 포위 격리 및 밀폐 등을 실시한다.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석면	-만성장해로서는 석면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침, 담 등 기관지염 증상을 수반하고 호흡곤란, 심폐항진 등을 호소하며, 폐암 및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방진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한다. -작업 후 목욕을 실시한다. -작업복은 작업 시에만 착용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갈아 입는다. -석면취급 근로자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한다.
	소음	-불쾌감, 정신피로를 발생시켜서 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작업능률을 저하, 청력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청력장애는 일시적인 난청이 경우와 영구적으로 오는 난청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영구적인 난청(직업성난청)은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때 회복되지 않는 내이성 난청의 일종이며, 나중에는 말소리까지도 침범 당하여 잘 들지 못한다.	-소음발생이 큰 기계, 기구를 교체하거나 격리시킨다. -발생원에 대한 방음흡음시설 설치(칸막이 등) 등을 한다. -작업 시에는 귀마개, 귀덮개 등 차음보호구 착용을 생활화 한다.
4. 야간작업	진동	-국소진동이 직접 수지부에 가하여져 수지부 혈관과 관절에 기계적 공진현상을 일으켜 말초간장해를 유발하며 종추, 막초, 골관절 장해를 일으킨다. 즉 존가락의 장백현상, 존가락의 감각이상, 투통, 감작 등의 통증을 일으킨다.	-진동흡수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보호구의 보수판리를 철저히 한다. -작업 시간을 단축한다.
	자외선	-피부의 흥반현상, 색소침착, 각막의 부종과 괴사, 피부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용접 시에 발생되는 자외선은 각막결막염과 노출된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며 불활성기스 또는 금속 아크용접 등을 강력한 자외선을 발생하며 눈 및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일이 많다.	-유해광선 장해를 예방하는 근본원칙은 방사선 발생원의 격리, 산란선 누설방지 등 방사선의 피폭방지에 있어 필름방지(film badge) 또는 포켓선량계로 피폭량을 측정한다. -피부보호의, 보호안경, 보호장갑, 안전모(방열용)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이상 기압	-고압에서는 가스가 혈액 속에 용해되어 있다가 급격한 감압으로, 특히 절수가 혈관과 조직 내에 기포를 형성하고 혈관이 약한 부위에 따라 피부의 가려움 및 근육통, 관절통, 호흡곤란, 시력장애, 반신불수 등을 일으킨다.	-수신에 따른 체재시간의 한도와 적절한 감압법을 염수하여야 한다. -고압 환경에 부적절한 고령자, 결핵현식, 만성호흡기 질환자, 심臟판막이 이상 자, 만성부비강염, 중이염, 골관절 이상 자 등은 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야간작업	기압	-야간작업은 뇌신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생체리듬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소화성궤양과 같은 위장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방암과의 관련으로 인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A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뇌신혈관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요법을 실천한다. -교단과 물질질을 바탕으로 세면하고 청결한 형태로 설계하며, 필요시 야간작업 중에 수면시간을 제공한다. -신혈관질환, 충주신경장해, 조혈기계질환, 생식기계 기능이상 등이 있는 경우 야간작업 배치 전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건강진단개인표

특수 / 배치전 / 수시 / 임시 / 연구활동 / 직종별

사업체명	아이언에이지(주)							현작업부서	철골					
근로자주소	(384-7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 602(주)에스에프에이							성명	민순규					
지방사무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업종	표면처리강제외			노출기간	0년 0개월					
현작업내용	기타			현직전입일	20230227		사원번호		1일노출시간					
주민등록번호	560213 - 1*****			나이	만 67 세	성별	남	전화번호	/010-3830-7676	입사년월일	20230227			
과거직력	작업공정명		근무년수	기 간		문진	특이사항없음		진찰	안과	특이사항없음			
	기계		30년				과거병력			이비인후	특이사항없음			
			년				가 족 력			피부	특이사항없음			
			년				업무기인성			치아	특이사항없음			
취급 물질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산화철(분진 및 흄)//소음//진동[그밖의진동기계, 기구사용작업]//자외선//광물성분진//용접흄//													
자타각증상	이상증상 없음													
일반 건강진단 항목								혈액형			색신			
항목	신장(Cm)	체중(Kg)	비만도	시력		청력(1000Hz)	혈압(mmHg)	요검사			빈혈검사		공복 혈당	총콜레스테롤
				좌	우	좌(dB)	우(dB)	최고	최저	요당	요단백	요장혈		
참고치						~29	~29	120미만	80미만	음성	음성	5.5~7.5	남39~50% 여36~47%	남13~16.5 g/dL 여12~15.5 g/dL
금회	169.9	65.0	정상/22.5			10	5	128	74					
항목	간기능검사(U/L)		심전도 검사				흉부방사선검사번호			563				
참고치	GOT	GPT					r-GTP	판독의사면허번호			* 하단 별도기재			
금회	400이하	350이하	11~63	정상				정상, 비활동성						
치과소견											치과의사			
건강진단 항목														
검사항목	검사결과			참고치			년			년				
기도청력 500Hz(좌)	10	dB	-10~29											
기도청력 2000Hz(좌)	5	dB	-10~29											
기도청력 3000Hz(좌)	20	dB	-10~39											
기도청력 4000Hz(좌)	25	dB	-10~39											
기도청력 6000Hz(좌)	35	dB	-10~39											
기도청력 500Hz(우)	10	dB	-10~29											
기도청력 2000Hz(우)	10	dB	-10~29											
기도청력 3000Hz(우)	15	dB	-10~39											
기도청력 4000Hz(우)	50	dB	-10~39											
기도청력 6000Hz(우)	60	dB	-10~39											
기도청력3분법(좌)	8.3	dB	0~24											
기도청력3분법(우)	8.3	dB	0~24											
이경검사 (좌)	정상													
이경검사 (우)	정상													
악력검사(좌)	34.6	Kg	~											
악력검사(우)	33.4	Kg	~											
손톱암박검사	정상													
통각	정상			정상										
진동각	정상			정상										
노력성폐활량(FVC)	3.50	L												
예측치대비 노력성폐활량	78.0	%												
일초량(FEV1)	2.94	L												

1. 건강관리구분 ·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적합성 평가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적합여부(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2 보호구착용 3 추적검사 4 근무증치료 5 근로시간 단축 6 작업전환 7 근로금지 및 제한 8 직업병학진의뢰안내 9 기타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다 건강장애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C _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라 건강장애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D 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₂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_N	질병의 소견이 있어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2.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유해요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예방	
1. 화학적인자	유기화합물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통은 필요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마개 혹은 뚜껑으로 막아 놓는다. -작업장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세면을 한다. -인체에 유기용제 증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및 작업복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수은	-용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금속류	-식욕부진 두통, 전신권태, 경미한 물 떨림, 불안, 호흡곤란, 화학성 폐렴, 입술부위의 침액, 메스꺼움, 설사, 청진장애 증세를 보이고 피부의 알레르기화, 기억상실, 우울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피부흡수를 통해 전신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용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연 4 알루미늄	-연이 체내에 흡수되면 초기에는 피로를 느끼고, 잠이 잘 안오며 팔다리의 통증, 식욕감퇴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계속하여 체내에 흡수되는 나이 증가하면 갑자기 배가 아파거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며, 어지럼과 손발에 힘이 약해지는 증세가 올 수 있음. -4알킬연은 무기화합물을 보이고 독성이 강하며, 호흡기로 흡수되어 주로 척추신경계통에 작용하고 간과 폐, 신장, 뇌, 등에 장해를 준다.	-식욕물을 골고루 섭취하고 흡연, 과음을 삼가며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함. -개인위생(식사전 세수, 방독마스크 착용, 작업복 세탁 등)을 철저히 기하고 근본적으로 납이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화기접근을 금한다.
	카드뮴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신장장애,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폐기종을 일으키며 끝경계장애와 심혈관계 장애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침, 가래, 콧물, 후각기능, 식욕부진, 구토, 설사,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고 앞이나 송곳니, 치은부에 연한 황색의 흰상색 소스침착물 볼 수 있다..	-작업자의 공기 중 카드뮴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작업장을 철저하게 한다. -작업장 내에서 식사나 흡연은 절대 금물이며 작업복은 자주 갈아입는다. -적절한 보호구(방진마스크, 보호장갑 등)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망간	-수면방해, 행동이상, 신경증상, 발음부정증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우산화비나동	-눈물이나 나음, 비염, 인두염, 기관지염, 천식, 흉통, 폐염, 폐부종, 피부습진 등	-환기를 철저히 한다.
	니켈	-폐암, 비강암, 눈의 자극증상, 발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경련, 정신착란 등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산 및 일카리류	-심한 호흡기 자극으로 일시적으로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난다. -피부를 빠른 물에 찌르는 것 한 통증이 생긴다.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수된 보호의, 고무장갑, 보호면을 착용하여 피부접촉을 방지한다. -보호용 안경을 착용한다.
2. 분진	가스상 물질류	-대부분 가스상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들어와 건강장애를 일으키며 이외에도 피부나 경구적으로도 첨밀될 수 있는 물질이 많고 일반적으로 신경 장해(파워작용), 피부염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에 노출되면 눈, 코, 맥, 피부 및 점막 등을 자극한다.	-화기에 주의한다.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가스, 흙, 분진 등을 유해가스용 방독마스크, 보호의, 상갑 등을 착용하고 필요 시, 세수, 샤워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킨다. -유해물 등이 저장장소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 관리한다.
	제88조에 의한 대상	-기관지염, 폐염, 접촉성 피부염, 기침, 호흡곤란, 폐의 육아종 형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환기를 철저히 한다.
	비소	-접촉성 피부염, 비증격 접막의 괴사, 다발성신경염 등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광물성분진	-진폐증의 자·타각증상이나 소견은 호흡기계에서 비롯된 호흡 곤란, 기침, 담액과다, 흉통, 혈담,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발진 공정의 습식화 및 분진억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3. 물리적 인자	면분진	-특징적인 자각증상인 월요증상(Monday disease)은 흥부암박감, 가슴통증, 호흡곤란, 기침 등인데 특히 월요일에 심하여 주말에 이를 수록 점차 경미하여 전다(월요일에는 면분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발진원 포위 격리 및 밀폐 등을 실시한다.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석면	-만성장해로서는 석면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침, 담 등 기관지염 증상을 수반하고 호흡곤란, 심폐항진 등을 호소하며, 폐암 및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방진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한다. -작업 후 목욕을 실시한다. -작업복은 작업 시에만 착용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갈아 입는다. -석면취급 근로자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한다.
	소음	-불쾌감, 청진피로를 발생시켜 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작업능률을 저하, 청력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청력장애는 일시적인 낭청인 경우와 영구적으로 오는 낭청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영구적인 낭청(직업성낭청)은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때 회복되지 않는 내이성 낭청의 일종이며, 나중에는 말소리까지도 침법 당하여 잘 듣지 못한다.	-소음발생이 큰 기계, 기구를 교체하거나 격리시킨다. -발생원에 대한 방음흡음시설 설치(칸막이 등) 등을 한다. -작업 시에는 귀마개, 귀덮개 등 차음보호구 착용을 생활화 한다.
4. 야간작업	진동	-국소진동이 직접 수지부에 가하여져 수지부 혈관 및 관절에 기계적 공진현상을 일으켜 말초장해를 유발하며 증후, 말초, 혈관질 장해를 일으킨다. 즉 손가락의 장백현상, 손가락의 감각이상, 투통, 감작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직동흡수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공구의 보수관리를 철저히 한다. -작업시간을 단축한다.
	자외선	-피부의 홍반현상, 색소침착, 각막의 부종과 괴사, 피부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유전 시에 발생되는 자외선은 각막결막염과 노출된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며, 불활성가스 또는 금속 아크용접 등은 강력한 자외선을 발생하여 눈 및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일이 많다.	-유해광선 장해를 예방하는 근본원칙은 밤사선 발생원의 격리, 산란선 구설방지 등 방사선의 피폭방지에 있어 필름뱃지(film badge) 또는 포켓선량계로 피폭량을 측정한다. -피부보호의, 보호안경, 보호장갑, 안전모(방열용)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이상 기압	-고압에서는 가스가 혈액 속에 용해되어 있다가 급격한 감압으로, 특히 질소가 혈관과 조직 내에 기포를 형성하고 혈관이 약한 부위에 따라 피부의 가려움 및 근육통, 관절통, 호흡곤란, 시력장애, 반신불수 등을 일으킨다.	-수심에 따른 체재시간의 한도와 적절한 감압법을 염수하여야 한다. -고기압 환경에 부적절한 고령자, 결핵천식 등의 만성호흡기 질환자, 심臟병자, 만성부비강염, 중이염, 골관절 이상 자들은 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특수환경	야간작업	-야간작업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생체리듬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소화성궤양과 같은 위장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방암과의 관련으로 인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A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요법을 실천한다. -교대근무 일정을 바꿔직한 형태로 설계하며, 필요시 야간작업 중에 수면시간을 제공한다. -신혈관질환, 중추신경장애, 조혈기계질환, 생식기계 기능이상 등이 있는 경우 야간작업 배치 전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검사항목	검사결과		참고치	년	년
예측치대비 일초량(FEV1%)	91.0	%			
일초율	84.0	%			
PEF	7.59				
기류용적폐곡선	정상				
[2차] 기도청력 500Hz(좌)	10	dB	-10~29		
[2차] 기도청력 1000Hz(좌)	10	dB	-10~29		
[2차] 기도청력 2000Hz(좌)	5	dB	-10~29		
[2차] 기도청력 3000Hz(좌)	20	dB	-10~39		
[2차] 기도청력 4000Hz(좌)	25	dB	-10~39		
[2차] 기도청력 6000Hz(좌)	35	dB	-10~39		
[2차] 기도청력 500Hz(우)	10	dB	-10~29		
[2차] 기도청력 1000Hz(우)	5	dB	-10~29		
[2차] 기도청력 2000Hz(우)	10	dB	-10~29		
[2차] 기도청력 3000Hz(우)	15	dB	-10~39		
[2차] 기도청력 4000Hz(우)	50	dB	-10~39		
[2차] 기도청력 6000Hz(우)	60	dB	-10~39		
[2차] 골전도청력 3000Hz(좌)	10	dB	-10~39		
[2차] 골전도청력 4000Hz(좌)	25	dB	-10~39		
[2차] 골전도청력 3000Hz(우)	10	dB	-10~39		
[2차] 골전도청력 4000Hz(우)	40	dB	-10~39		
[2차] 기도청력 3분법(좌)	8.3	dB	0~24		
[2차] 기도청력 3분법(우)	8.3	dB	0~24		
[2차] 팀파노메트리검사(좌)	B 형				
[2차] 팀파노메트리검사(우)	As 형				
판정	소견	조치	유해인자	건강구분	업무수행여부
C1	[이비인후계-2차] 소음(감각신경성):난청주의[[우측]]	소음(난청주의):보호구착용철저/추적관찰	소음/광물성분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 및 흙)/ 용접흄/ 자외선/ 진동[그밖의진동기계, 기구사용작업]/	C1	
	정상	건강양호		A	나
	[이비인후계-2차] 정상[[좌측]]	소음:건강양호			
	[이비인후계] 추가선택검사요(청력검사)	2차검진 요함	소음/	R	
건강진단일자	2023-02-27	건강진단기관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경북의원	건강진단의사	김정원 (서명또는인)
판독의사	흉부 - 신경자 114호			근로자	민순규 (서명또는인)

* 귀하의 차기 건강진단예정일자는 2023년 08월 27일 이내이며, 동 일자는 귀하가 근무하는 작업공정에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053-856-121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적합성 : 가.현조건하에서 현작업가능 / 나.일정조건하에서 현작업가능 / 다.일정기간 현작업불가 / 라.영구적으로 현작업 불가

1. 건강관리구분 ·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적합성 평가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적합여부(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2 보호구착용 3 추적검사 4 근무중치료 5 근로시간 단축 6 작업전환 7 근로금지 및 제한 8 직업병확진의뢰안내 (건강진단기관이 안내) 9 기타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C _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 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다 건강장애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D ₂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소견자)		
D _N	질병의 소견이 있어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분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라 건강장애의 악화 혹은 연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2.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유해요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예방
1. 환경전자기장	유기화합물	-눈, 피부, 호흡기 접촉의 자극 증상 -동네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마취되기전 증상이 나타난다. 즉, 어지러움 증, 두통, 도취감(흥분), 피로, 졸음, 구역, 지나친 상실감, 가슴통증에 이어 흡수증도가 되면 접촉적으로 의사의 앓을 수 있다. -반성 피로 시에는 감각 혹은 운동기능 이상, 기억력 저하, 피로, 신경질, 불안 등의 신경세통의 장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통은 필요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마개 혹은 뚜껑으로 막아 놓는다. -작업장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복으로加以하고 세면을 한다. -이제에 유기용제 증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및 작업복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수은	-식육부진, 두통, 전신倦怠, 경미한 물 떨림, 불안, 호흡곤란, 화학성 폐렴, 일출부위의 차백, 메스꺼움, 설사, 청진장에 증세를 보이고 피부의 알레르기 기역상증, 우울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피부흡수를 통해 전신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용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금속	-연이 체내에 흡수되면 초기에는 피로를 느끼고, 잠이 잘 안오며 팔다리의 통증, 식욕감퇴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될 수 있으며 계속하여 체내에 흡수되는 날이 증가하면 간지가 배가 아프거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며 어지럼과 솔방에 힘이 약해지는 증세가 올수 있음 -4월킬연으로 무기연계물보다 독성이 강하며, 호흡기로 흡수되어 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간과 뇌, 신장, 뇌 등에 작용해 준다. -글리세린증상: 무기연과는 달리 중추신경계의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노출될 경우 일 후에 불안, 흥분, 근육연축, 망상, 환상이 일어나고 혈압저하, 체질저하, 맥박수가 감소한다.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고 흡연, 과음을 삼가며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한다. -개인위생(식사전 세수, 방독마스크 착용, 작업복 세탁 등)을 철저히 지키고 그부분으로 날이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억력을 유발하는 물을 매일 1회이상 접촉한다. -작업의 교대로 실시(1일 노출시간을 가급적 단축)한다.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ガス용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등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류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신장장애,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폐기종을 일으키며 물결관성장해와 심혈관계 장해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침, 가래, 콧물, 후각이상, 식육부진, 구토, 설사, 청진장 증상 등이 나타나고 앞이나 송곳니, 치은부에 연한 황색의 흰상색소침착을 볼 수 있다..	-작업장의 공기중 카드뮴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작업장을 청결하게 한다. -작업장 내에서 식사나 흡연은 절대 금물이며 작업복은 자주 갈아입는다. -작업한 보호구(방진마스크, 보호장갑 등)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망간	-수면방해, 행동이상, 신경증상, 발음부정화 등	-보호구 창문을 철저히 한다.
	온실흙 바니티 전등	-눈물이나옴, 비염, 인두염, 기관지염, 천식, 흉통, 폐염, 폐부종, 피부습진 등	-환경기를 철저히 한다.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니켈	-폐암, 비강암, 눈의 자극증상, 발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경련, 정신착란 등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산 및 일카리우	-신한 호흡기 자극으로 일시적으로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난다. -피부를 비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 -화상을 입힐 수 있다. -장기 노출 시에는 척추부이상 및 기관지 등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 -번수된 보호의, 고무장갑, 보호면을 착용하여 피부접촉을 방지한다. -보호용 안경을 착용한다.
	가스상 물질류	-대부분 가스상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들어와 저강장해를 일으키며 이외에도 피부나 경구적으로도 침입될 수 있는 물질이 많고 일반적으로 신경장해(마취작용), 피부염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에 노출되면 눈, 코, 목, 피부 및 점막 등을 자극 한다.	-화기에 주의한다. -작업환경에서 밝은색의 가스, 흙, 분진 등을 유해가스용 방독마스크, 보호의, 장갑 등을 적용하고 필요 시, 세수, 샤워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킨다. -유해물질들이 저장장소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 관리한다.
	영 제83조에 의한 대형설비 베릴룸	-기관지염, 폐염, 접촉성 피부염, 기침, 호흡곤란, 폐의 육아종 형성	-보호구 창문을 철저히 한다. -환경기를 철저히 한다.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비소	-접촉성 피부염, 비증격 접막의 괴사, 다발성신경염 등	-보호구 창문을 철저히 한다.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2. 본진	광물성분진	-진폐증의 자·타각종상이나 소견은 호흡기에서 비롯된 호흡 곤란, 기침, 담액과/or 흉통, 혈涕,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발진 공정의 습식화 및 분진억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면분진	-특징적인 자각증상인 월요증상(Monday disease)은 흥분압박감, 가슴통증, 호흡곤란, 기침 등인데 특히 월요일에 심하며 주말에 이를 수록 점차 경미하여 전날(월요일에는 면분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발진원 포워 격리 및 밀폐 등을 실시한다.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석면	-만성장애로서는 석면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침, 담 등 기관지염 증상을 수반하고 호흡곤란, 심폐항진 등을 호소하며, 폐암 및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밀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방진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한다. -작업 후 목욕을 실시한다. -작업복은 작업 시에만 착용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갈아 입는다. -석면취급 근로자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한다.
3. 물리적 인자	소음	-불쾌감, 정신피로를 발생시켜서 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작업능률을 저하, 청력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청력장애는 일시적인 난청이 경우와 영구적으로 오는 난청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영구적인 난청(직업성난청)은 높은 소음에 장기로 노출될 때 회복되지 않는 내이성 난청이며, 나중에는 말소리까지 침범 당하여 잘 듣지 못한다.	-소음발생이 큰 기계, 기구를 교체하거나 격리시킨다. -방생원에 대한 방음흡음시설 설치(칸막이 등) 등을 한다. -작업 시에는 귀마개, 귀덮개 등 차음보호구 착용을 생활화 한다.
	진동	-국소진동에 직접 수지부에 가하여져 수지부 혈관 및 관절에 기계적 공진현상을 일으켜 말초장해를 유발하며 증족, 막초, 골관절 장해를 일으킨다. 즉, 손가락의 척백현상, 손가락의 감각이상, 투통, 감작 등의 통증을 일으킨다.	-진동흡수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보호구의 보수관리를 철저히 한다. -작업 시간을 단축한다.
	자외선	-피부의 흥분현상, 색소침착, 각막의 부종과 괴사, 피부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용접 시에 발생되는 자외선은 각막경막염과 노출된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며, 불활성가스 또는 금속 아크용접 등은 강력한 자외선을 발생하며 눈 및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일이 많다.	-유해광선 장해를 예방하는 근본원칙은 방사선 방사선 및 생활원의 격리, 산란선 험수방지 등 박사선의 피폭방지에 있어 필름방지(Film badge) 또는 포켓서류방지 등으로 폭포방지 측정한다. -피부보호의, 보호안경, 보호장갑, 안전모(방열용)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이상기압	-고압에서는 가스가 혈액 속에 용해되어 있다가 급격한 감압으로, 특히 질소가 혈관과 조직 내에 기포를 형성하고 혈관이 악한 부위에 따라 피부의 가려움 및 근육통, 관절통, 호흡곤란, 시력장애, 반신불수 등을 일으킨다.	-수심에 따른 체재시간의 한도와 적절한 감압법을 염수해야 한다. -기기�화 환경에 부적절한 고령자, 결핵천식 등의 만성호흡기 질환자, 심폐관통에 이상 있는 자, 만성부비강염, 중이염, 골관절 이상 자 등은 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야간작업	야간작업	-야간작업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생체리듬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소화성궤양과 같은 위장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방암과의 관련으로 인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A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요법을 실천한다. -교내외 기관 및 정부를 바탕으로 한 형태로 설계하며, 필요시 야간작업 중에 수면 시각화 제작한다. -심폐관통 질환, 중증신경장애, 조혈기계질환, 생식기계 기능이상 등이 있는 경우 야간작업 배제 및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